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0월 24일, 문대림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0월 2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4. 12. 1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2026. 9. 8.)

상정, 축조심사, 의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6. 9. 1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문대림의원)

현행법은 친환경농어업 관련 기술연구와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농어업자재 등의 생산·유통·소비를 촉진

하기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의 역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친환경농어업은 1990년대 초반까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현재도 민간단체는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교육·훈련·기술개발·경영지도 등을 하여 친환경농어업 등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민간단체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민간단체를 육성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며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에 민간단체의 육성 및 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민간단체 육성을 통해 친환경농어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제11호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농어업 등 민간단체 육성 및 예산 지원 규정 마련(안 제5조제2항 신설)

"친환경농어업"이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어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의미함.[1)]

---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어업"이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어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농산물·수산물·축산물·

화학 비료나 농약 사용은 토양 오염을 유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빗물 등으로 인해 하천이나 바다로 유입되어 수질 오염도 일으킬 수 있고, 화학 비료 등의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기후위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화학비료 등을 사용하는 기존 관행농어업의 폐단 및 한계에 따라, 최근 친환경농어업은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을 위한 필수적인 접근법으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도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계획 등을 수립·추진하여 현재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21~'25) 계획[2]"을 추진중에 있음.

임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또는 친환경어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이 경우 민간단체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업 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어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3.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 방안
3의2. 친환경 약제와 병충해 방제 대책
4.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 등의 개발·보급·교육 및 지도 방안
5. 친환경농어업의 시범단지 육성 방안
6. 친환경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유기식품등 및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생산·유통·수출 활성화와 연계강화 및 소비 촉진 방안
7. 친환경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 방안
8.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방안
9. 육성계획 추진 재원의 조달 방안
10. 제26조 및 제35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육성 방안
11. 그 밖에 친환경농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또한, 이와 관련하여 친환경농업의 확대 및 발전을 위하여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키고,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추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 1997년 12월 제정되어 1998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음.[3)]

동법 제5조에서는 친환경농업 관련 기술연구와 친환경농산물 등의 생산·유통·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로 하여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농업 등[4)]에 관한 육성시책에 협조하고 필요한 교육·훈련·기술개발 등을 함으로써 친환경농업 등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법 제5조 등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관련 규정 및 정책에도 불구하고, 제5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의 주요 목표 대비 달성 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됨.

농약 사용량의 경우 1년차('21년) 11.8(kg/ha), 2년차 12.4(kg/ha), 3년차 12.7(kg/ha)로 나타나 감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하여 당초 목표인 '25년 농약 사용량 9.5(kg/ha)를 달성하기가 요원해 보임.

또한, 다른 주요 목표인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비율 확대(10%)의 경우에도 '21년 4.9%, '22년 4.6%, '23년 4.6%로, 1년차 대비 오히려 감소하여 당초 목표('25년 10%)를 달성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

3) 「환경농업육성법」('98 시행)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13 시행)

4) 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등

【 제5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 주요 목표 및 달성현황 】

주요 목표	목표치	달성 현황
화학비료/농약 사용 감축(kg/ha)	화학비료: ‘25년) 233	‘21년 285.5, ‘22년 255, ‘23년 242
	농약: ‘25년) 9.5	‘21년 11.8, ‘22년 12.4, ‘23년 12.7
친환경농업의 ‘환경가치’ 인식 제고(%)	‘25년) 50%,	‘21년 30.2, ‘22년 32.8, ‘23년 35.9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비율 확대(%)	‘25년) 10%	‘21년 4.9, ‘22년 4.6, ‘23년 4.6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관 친환경농업과 제출(2024. 11. 26.)

이에 개정안은 친환경농어업의 발전 및 확대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법 제5조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현재 한국유기농업협회, 흙살림연구소 등의 민간단체가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교육·훈련·기술개발·경영지도 등을 하여 친환경농어업 등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측면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친환경농어업의 발전 및 확대 필요성의 중대에도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차원의 친환경농어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 등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친환경농어업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육성과 지원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친환경농어업의 발전 및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 및 유사 입법례를 살펴볼 때, 개정안과 같이 민간단체의 육성 및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먼저, 현행법 제13조(친환경농어업 기술 등의 개발 및 보급)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이하 “농림축산식품부장관등”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보급하거나 교육・지도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이 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자금 등을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제54조(인증제도 활성화 지원)에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등으로 하여금 ‘농어업인 또는 민간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품질관리체제 구축 또는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상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 관련 규정 】

제13조(친환경농어업 기술 등의 개발 및 보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기술과 자재 등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교육·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보급하거나 교육·지도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자재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물품의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 수출업자 및 인증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자금 등을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 및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친환경농수산물 2. 이 법에 따라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인증제도 활성화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이 법에 따른 인증제도의 홍보에 관한 사항 2.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이 법에 따른 인증품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계획서의 견본문서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품질관리체제 구축 또는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인 또는 민간단체 2. 제품 등의 인증사업자, 공시사업자, 인증기관 또는 공시기관 3. 인증제도 관련 교육과정 운영자 4. 인증품 등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관련 표준모델 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자

이와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친환경농어업 등 관련 민간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근거가 이미 현행법 제13조, 제16

조, 제54조에 규정되어 있음.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 관련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현행법에 따른 친환경농업 관련 민간단체 지원 현황 】

○ 사업명: 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융자) ○ 사업비: 240백만원(융자 80%, 자부담 20%, '24년) ○ 대상기관: **부산울산경남생태유아공동체** ○ 지원근거: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 지원연혁: 생산자・소비자단체 등의 판로확대 등을 위해 '03년부터 사업 시행, 부산울산경남생태유아공동체는 '20년부터 사업 지원중
○ 사업명: 친환경인증 활성화사업(친환경농업 의무교육) ○ 사업비: 280백만원(2개기관 각 140백만원, '24년) ○ 대상기관: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 ○ 지원근거: 「친환경농어업법」제54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 지원연혁: '98년 「친환경농업법」 제정 당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통해 시행, '18년부터 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 '23년부터 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와 한국친환경농업협회주관으로 추진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관 친환경농업과 제출(2024. 12. 10.)

현행법 제13조, 제16조, 제54조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의 재량이 허용되는 규정이지만,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농어업 등 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육성 및 예산 지원이 강행규정으로 의무사항인 점에 차이가 있음.

유사 입법례의 경우 민간단체에 대한 육성 및 예산 지원 등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판단 여지가 있는 임의규정으로 규율하고 있음.

【 유사 입법례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민간단체 지원 및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자산 및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57조(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11.7.28.> 1. 국제 자연환경보전단체·기구와의 협조와 교류 2. 멸종위기야생생물의 보호 3. 그 밖의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자산의 보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민간해양생태계보전·관리단체의 육성)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활동을 하는 민간해양생태계보전·관리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1. 국제 해양생태계보전단체·기구와의 협조와 교류 2. 해양보호생물의 보호 3. 그 밖에 해양생태계 및 해양자산의 보전

개정안과 같이 민간단체에 대한 육성 및 예산 지원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할 경우 재정 운용의 탄력성 저하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개정안을 수용할 경우에는 유사 입법례처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의적인 지원·육성 규정을 두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현재(2024.12.) 친환경농업 관련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아래 5개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5조, 제6조, 제10조, 제11조에 따라 보조금 및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바,[5]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5) 농림축산식품부 확인 결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상기 5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실제 지원 여부는 부처(행정안전부) 간 협조 어려움에 따라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임.

【 친환경농업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

번호	법인명	등록연도	주요 사업 내용	규모(명)
1	한국유기농업협회	2000	유기농업의 연구개발 및 교육	3,300
2	흙살림연구소	2001	국내외 친환경농업 기술 조사 및 연구	600
3	돌나라한농복구회	2004	국내외 친환경 농업인 교류대회를 통한 회원간 정보교환 및 교류	4,000
4	가톨릭농민회	2005	생명농업의 실천과 생활공동체 활동	2,106
5	부산울산경남생태유아공동체	2007	유치원·어린이집 아이들에게 친환경농산물 등 건강한 먹을거리 공급과 관련된 사업	276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관 친환경농업과 제출(2024. 11. 2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5조(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②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및 이 법이 정하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등록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의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조세감면) 등록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및 기타 조세에 관한 법령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우편요금의 지원) 등록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에 필요한 우편물에 대하여는 우편요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으며, 그 내용과 범위에 관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내 민간단체의 육성 및 지원방안 포함 (안 제7조제2항제11호 신설) 및 부칙

육성계획 수립 시 설정한 목표치를 달성하는 등 친환경농어업의 발전 및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노력 및 정책 추진뿐만 아니라, 민간단체 차원의 친환경농어업 관련 교육·훈련·기술개발·경영지도 등의 노력을 통한 민관 협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할 것임.

이에 개정안은 육성계획 수립 시 "민간단체의 육성 및 지원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여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통한 친환경농어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기존 관행 농어업의 한계에 따라 친환경농어업으로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점과, 현행법상 규정하고 있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면, 기본계획 등의 수립 시 민간단체 지원 또는 육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한 경우와 이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상존하고 있음.

기본계획 수립 시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통한 해당 법률의 제정 목적 달성에 기여하려는 입법례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

한 법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기본계획 수립 시 민간단체의 의견수렴을 하도록 규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행법과 차이가 있음.

【 법률상 육성(기본)계획 내 민간단체 지원 부분 포함 비교 】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 내용 포함 법률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 내용 미포함 법률
<해양수산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10. 독도관련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통일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제13조(남북관계 발전기본계획의 수립) 4.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및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와의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환경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국가환경교육계획의 수립) 6. 환경교육을 위한 민간활동의 활성화 및 국제협력	농식품부의 「친환경농업법」을 포함한 대다수 법률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관 친환경농업과 제출(2024. 11. 26.)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대다수의 법률에서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음.

상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등과 같이 기본계획에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는 특정 산업의 육성보다는 “범정부적인 외교 및 환경” 등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통한 민관 협력이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특정 분야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민간단체 활성화를 통한 친환경농어업 발전이라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친환경농어업 산업 그 자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농어업 생태계 보전 및 기후위기 대응 등 환경 측면과도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현행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육성계획 수립 시 민간단체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6]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 지원 및 육성 관련 사항을 간접적으로 육성계획(현행법 제7조제2항제4호·제6호[7])에 반영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육성계획에 민간단체 지원 및 육성 관련사항을 보다 구체화·명확화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임.

---

6)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또는 친환경어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이 경우 민간단체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7)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 등의 개발·보급·교육 및 지도 방안
6. 친환경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및 유기식품등의 생산·유통·수출 활성화와 연계강화 및 소비 촉진 방안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준병)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